

제 1471 호
1980. 2.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 공보관 유천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보

차례

◎ 조례

제2571호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증개정조례	3
제2572호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례증개정조례	4
제2573호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개정조례	4
제2574호	서울특별시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10
제2575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	10

◎ 훈령

제 80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폐점운영규정증개정규정	14
--------	-----------------------	----

(이면계속)

공											
찰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제 347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구청파이하사무분장규칙증개정규칙	14
---------	-------------------------------	----

◎공 고

제 54 호	제2종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공고	15
제 5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5
제 64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공고	16
제 69 호	회계관계적인폐기및등록공고	16

◎구 고 시

제 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7
제 16 호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시행허가	17

◎구 공 고

제 5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	18
제 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에 따른공람공고	18
제 7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공람공고	19
제 10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완료공고	20
제 2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0

◎사 령

◎정 정 공 고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행정
서사운영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 29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장 고건 ⑩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조례제2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행정서사업무 수수료액 기준표

구 분	세 부 내 역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문 안 서류	· 양식(확인) 간단한 서류 · 사실증명,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1매	900원이하	초과분1매당 500원
문 안 서류	· 각서, 매도증서, 위임장, 유가증권 등 간단한 서류	1매	1,300원 이하	초과분1매당 700원
	· 이유서, 건의서, 진정서, 행정심판청구서, 재심청 구서, 판원서 등	(2매기준)	5,600원 이하	초과분1매당 1,300원
	· 단체 조합 법인설립 판 계서류 및 법인설립 허 가신청에 관한 서류	1건	20,000원 이하	신청시 구비서류준비 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가산할 수 있음
	· 사업계획등이 첨부되는 특수한 개인허가신청서 등	1건	5,800원 이하	신청시 구비서류준비 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가산할 수 있음
도면	· 간단한 도면	1매	1,000원 이하	
	· 상세한 도면(구조도, 구 획도 등)	1매	2,000원 이하	
번역	· 외국어를 외국어로 서류작 성	외국어를 한글로 서류작성 하는 경우의 3배이내		
	· 외국어를 한글로 서류작 성	당해년도 정부 예산 단가 법위내		
서류 내행토	· 서류제출		2,600원	교통비, 숙박비등 실 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는 그 실비를 가산할 수 있음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체육 진흥협의회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0. 1. 29 서울특별시장 고건 ⑩</p> <p>◎서울특별시조례제2572호</p> <p>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례증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증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조증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p> <p>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현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계 전문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4조의 제명, 제1항 및 제2항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한다.</p> <p>제6조 제2항 중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를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로 한다.</p> <p>제8조 제2항 중 "내무국장"을 "협의회업무주 관국장"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록</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지방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0. 1. 29 서울특별시장 고건 ⑩</p>	<p>◎서울특별시조례제2573호</p> <p>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착용범위)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임용권자) 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 공무원·지도관·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p> <p>② 제1항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휴직·복직·면직·과연·해임·정직·감봉 및 견谪을 말한다.</p> <p>③ 경찰국·소방본부와 6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소속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용권은 경찰국장·소방본부장과 당해 사업소장이 각각 위임전결한다.</p> <p>제4조(인사기록카드) 고용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정본과 부본을 작성하며, 정본은 임용기관(임용권의 위임전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부서에서, 부</p>
---	--

<p>본은 근무부서에서 각각 하자·기록한다.</p> <p>제5조(인사보고) ①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정원 및 현원의 관리를 위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현원대비표를 작성·비치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인사통계보고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통계보고규칙을 준용하되, 정기보고 기일 및 작성단위기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보고기일 : 분기별보고 및 반기별보고는 분기 또는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이내, 연차별 보고는 다음해 3월 15일이내 2. 작성단위기관 : 임용기관 <p>제2장 임 용</p> <p>제6조(신규임용) ① 고용직공무원의 직명은 사환으로 한다.</p> <p>② 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해야 한다.</p> <p>③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p> <p>④ 고용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자는 임용일 현재 1년이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p> <p>⑤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과사유 및 임용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일반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조(기관간 전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고용직공무원의 기관간 전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원조정에 따른 현원 조정 2. 기구개편에 따른 현원조정 3. 기관간 고용직공무원의 교류 계획 4. 임용권자가 고충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p>제8조(전보체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6월이내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p> <p>다만,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발령일) 신규임용 및 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일 및 15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3장 적성 및 능력개발</p> <p>제10조(검정실시기관 및 방법)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검정은 임용권자가 실시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소속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2인 이상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한다.</p> <p>제11조(서류전형)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평정요소별로 평정한다.</p> <p>제12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15점을 만점으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p> <p>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시험위원의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평균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p>
--	--

<p>제13조(교육훈련)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연2회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이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경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정계의결 결과에 따라 정계처분하여야 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의 정계에 관하여는 이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지방공무원의 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장 신문보장</p>	<p>제5장 보 죄</p>
<p>제14조(근무상한연령) ①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23세로 한다.</p>	<p>제10조(인사지도 감독) 시장은 고용직공무원의 인사행정을 지도하고, 기관간 인사기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p>
<p>②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이 달하는 날의 1월과 6월사이에 속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사이에 속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p>	<p>1. 임용에 관한 사항</p>
<p>제15조(당연퇴직)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p>	<p>2. 겸경에 관한 사항</p>
<p>제16조(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p>	<p>3. 정계에 관한 사항</p>
<p>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없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파원이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p>	<p>4.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p>
<p>제17조(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철판하기 위하여 경질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p>	<p>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정계)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직영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으로 직영이 폐지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고용직공무원정·현원대비표

[별지제1호서식]

현재

기관명	직종	직명	합계	1 종												2 종												경노무고용과				
				전체부임근무	목동	교원	공무원	통신보조원	전기보조원	기계보조원	사진원	방역원	방법원	행정보조원	방호원	사유원	지도원	차도원	시행원	외표기사	수도보조원	건설보조원	원예원	전달원	조사원	교안원	교대원	판리원	보리원	감원	잡무원	재봉원
경원																																
현원																																

380mm × 268mm
(백상지 70g/m²)

〔별지 제2호자식〕

서류전형평정표

① 접수번호		② 접수년월일	년 월 일
③ 부 서	가. 임용예정	직무구분	
	나. 현 재	직무구분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연 빵 만 세	⑦ 성별 남·여
⑧ 최종출신학교			
⑨ 자격 및 면허			
⑩ 경력			
⑪ 담당직무와 구체적 내용			
⑫ 자격	가. 소요 학력	경력	년 월
	나. 총족 학력	경력	년 월
⑬ 평정요소	평정기준점수	평정점수	
가. 학력	10점	점	
나. 경력	10점	점	
다. 임용예정자의 연구실적	20점	점	
라. 임용직위내용의 적합성	30점	점	
마. 담당직무의 수행능력	30점	점	
합계	100점	점	
⑭ 첨부서류	1.	4.	
	2.	5.	
	3.		
⑮ 비고			
⑯ 평정 연월일		⑰ 담당위원	⑯

비고 1. 평정요소란은 위원이 채점점을 기입한다.

2. 비교란은 위원의 특별한 소감을 기입한다.

3. 평정이 완료되면 담당위원이 서명捺印한다.

(190mm×268mm 백상지 70g/m²)

(별지 제3호서식)

면 접 시 험 평 정 표

① 접수번호 (응시번호)		② 접 수 연 월 일	년 월 일		사 전		
③ 임용예정 직무구분							
④ 성 명 (한글)	(한자)	⑤ 생년 월일	⑥ 연 령	⑦ 만 세	⑧ 성 별	남·여	
⑨ 족 중 출 신 학 교							
⑩ 담당직무의 구체적 내용							
⑪ 평 정 요 소	⑫ 평 정 기준 점 수				⑬ 합 계		
	상(3점)	중(2점)	하(1점)				
	가.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점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점
	라.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점
마. 창의력, 회기력, 기타 발전 가능성				점			
합 계	점	점	점	점	점		
⑭ 비 고							
⑮ 평 정 연 월 일		⑯ 담당위원	⑰				
<p>비고 1. 평정요소란은 위원이 ○표시로 기입한다.</p> <p>2. 비교판은 위원의 특별한 소감을 기입한다.</p> <p>3. 평정이 완료되면 담당위원이 서명 날인한다.</p>							
(190mm × 268mm, 백상지 70g/m ²)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시법 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정수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1. 31 서울특별시장 고건 ①</p> <p>◎서울특별시조례제2574호</p> <p>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 조례증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 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2) 개인연습사용료의 태능체육공원관 다음에 성등종합체육시설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란중 "토, 일, 휴일은 평일 의 3할가산"을 "토, 일, 휴일은 평일의 3 할(골프장은 5할)가산"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성 체</td><td style="width: 20%;"><input type="radio"/>골프장</td><td style="width: 10%;">5000</td><td style="width: 60%;"><input type="radio"/>1라운드당</td></tr> <tr> <td style="width: 10%;">동 육</td><td style="width: 20%;"><input type="radio"/>골프연습장</td><td style="width: 10%;">3000</td><td style="width: 60%;"><input type="radio"/>120개1상자당</td></tr> <tr> <td style="width: 10%;"> 종 시</td><td></td><td></td><td></td></tr> <tr> <td style="width: 10%;"> 합 설</td><td style="width: 20%;"><input type="radio"/>카트</td><td style="width: 10%;">1000</td><td style="width: 60%;"><input type="radio"/>1라운드당</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부 록</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주차 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2. 6 서울특별시장 고건 ①</p> <p>◎서울특별시조례제2575호</p>	성 체	<input type="radio"/> 골프장	5000	<input type="radio"/> 1라운드당	동 육	<input type="radio"/> 골프연습장	3000	<input type="radio"/> 120개1상자당	종 시				합 설	<input type="radio"/> 카트	1000	<input type="radio"/> 1라운드당	<p>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제1항중 "시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으로, "별표1의 2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주차장 개설작가"를 "법 제1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당해주차장의"로 한다.</p> <p>제2조 제2항중 "법 제9조 제2항"을 "법제9 조제3항"으로 한다.</p> <p>제3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시영주차장"을 각각 "공영주차장"으로 한다.</p> <p>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조(공용의 차량) 법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 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 하여 공용제한 개시일의 7일전부터 공용제 한 해제시까지 당해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p> <p>제6조중 "표준규격은 너비 2.0미터, 길이5.0 미터로 하되"를 "규격은 폭2.5미터이상, 길 이5.5미터이상으로 하되"로 한다.</p> <p>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 항 중 "주차장의 명칭 및 관리자의 성명, 주 소를"을 "관리자의 성명, 주소, 주차제한차 량 등을"로 한다.</p> <p>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 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자는 협정제2호 서 식에 의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 지상단에 서울특별시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 시를 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2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주차대수 40대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p>				
성 체	<input type="radio"/> 골프장	5000	<input type="radio"/> 1라운드당																		
동 육	<input type="radio"/> 골프연습장	3000	<input type="radio"/> 120개1상자당																		
종 시																					
합 설	<input type="radio"/> 카트	1000	<input type="radio"/> 1라운드당																		

<p>모집 것.</p> <p>2. 대상토지는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을 것.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p> <p>3. 신고노의주차장의 입구 및 출구에 접하는 도로의 폭은 4미터이상일것. 이 경우 그 입구 및 출구의 설치장소에 관하여는 영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에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2조의3제4항중 "시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영주차장"을 각각 "공영주차장"으로 한다.</p> <p>제1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시영주차장"을 각각 "공영주차장"으로 한다.</p> <p>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2조의5(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등) ①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업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한 조업주차장을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시장이 지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차장이 속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화랑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및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대치계획등) 4. 조업주차장을 다른 주차장과 출입구 등을 따로 사용, 분리할 수 있는 계획 <p>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2조의6(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등) ①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p>	<p>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유통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p>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도 평판하게 할 것</p> <p>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할 것</p> <p>③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표지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다. <p>제13조제1항제2호중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 및 당해 도로가 도시설계구역안인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3.5미터이상의 진입로 2곳이상"을 "3.5미터 이상의 진입로 2곳이상으로 하되, 출구와 입구를 분리할 것"으로 한다.</p> <p>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⑤건축물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용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제15조제1호중 "제9조"를 "법 제9조"로 하고,</p>
---	---

<p>증조제7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제18조제1항중 "10일"을 "20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 주차장의 관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의주차장의 설치허가 및 그 취소와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의주차장의 신고와 수리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노의주차장 용도로의 전용허가 및 신고의 수리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와 무면제 및 이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부과 및 징수와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 교부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조업주차장의 위치 지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금부과처분 및 징수 <p>[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별표1의2]를 삭제한다.</p> <p>[별지제1호서식]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 비 고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계 토</th> <th colspan="2">색 채</th> </tr> <tr> <th>바탕</th> <th>글씨(교체)</th> </tr> </thead> <tbody> <tr> <td>공영주차장</td> <td>알미늄빛</td> <td>녹색</td> <td>무 색</td> </tr> <tr> <td>민영주차장</td> <td>칠판</td> <td>청색</td> <td>원 색</td> </tr> </tbody> </table> <p>[별지제2호서식] 및 [별지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4호서식] 및 [별지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구 분	계 토	색 채		바탕	글씨(교체)	공영주차장	알미늄빛	녹색	무 색	민영주차장	칠판	청색	원 색	<p>한다.</p> <p>부 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1회주차권</th> <th>회수권</th> <th colspan="2">월 정 기 권</th> </tr> <tr> <th>1구회당 30분마다</th> <th>(1일)</th> <th>주 간</th> <th>야 간</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500</td> <td>6,000</td> <td>75,000</td> <td>56,000</td> </tr> <tr> <td>2급지</td> <td>200</td> <td>2,400</td> <td>45,000</td> <td>22,500</td> </tr> <tr> <td>3급지</td> <td>200</td> <td>2,000</td> <td>25,000</td> <td>-</td> </tr> </tbody> </table> <p>- 비 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1구회는 보통 및 소형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회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회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지 :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별위액판한조례에서 규정한 도심지역의 주차장 2급지 : 1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3급지 : 지하철 연계주차장 및 등 주차장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1급지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30분마다 1,000원을加산한다. 회수권 및 월 정기권은 노의주차장에 한한다.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구 분	1회주차권	회수권	월 정 기 권		1구회당 30분마다	(1일)	주 간	야 간	1급지	500	6,000	75,000	56,000	2급지	200	2,400	45,000	22,500	3급지	200	2,000	25,000	-
구 분			계 토	색 채																																			
	바탕	글씨(교체)																																					
공영주차장	알미늄빛	녹색	무 색																																				
민영주차장	칠판	청색	원 색																																				
구 분	1회주차권	회수권	월 정 기 권																																				
	1구회당 30분마다	(1일)	주 간	야 간																																			
1급지	500	6,000	75,000	56,000																																			
2급지	200	2,400	45,000	22,500																																			
3급지	200	2,000	25,000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상국	지방서기관에 임한. 내무국 근무를 명함.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김영록 이태종	" 지방서기관에 임한. 한강공원관리사업소 관리과장 에 보임	" "	" "				
◎1990년 1월 31일자 5급 공무원 겸임							
령 제3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황정환	양정과 조직계장에 겸임함.	양정과	지방행정사무관				
◎1990년 2월 2일자 지방별점직 9급상당 공무원 연직							
령 제3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경애	원예 의뢰하여 그 직을 면함.	경찰국 면허과	행정직 9급 상당 (전공원)				
◎1990년 2월 3일자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령 제3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권혁준	지방지적기원보	영등포구	지적기원보				
김준수	"	성북구	"				
◎1990년 2월 5일자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전보							
령 제3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찬규	성북구	동대문구	지방건축기사보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승진 및 전보							
령 제34호							
연번 번호	성명	제 청	현 직				
		부서	직위(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1	신영호	시민생활과		지방도록기사	시민생활과		지방도록 기사보
2	이재호	중랑구본부		"	중랑구		"
3	오한수	"		"	탄천하수 처리장		"
4	김광호	강동구		"	관악구		"
5	고원산	남부건설 사업소		"	상수도 사업본부		"
6	이준해	차수파		"	차수파		"
7	장낙군	지하철 건설본부		"	지하철 건설본부		"
8	김한식	동부건설 사업소		"	제개발과		"
9	김정오	종합건설 부		"	성동구		"

[별지 제5호서식]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제13조의6제3항관련)



-비 고-

1. 규격

- 가. 표지판 :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28mm × 세로32mm

2. 색채

청색바탕에 휠체어 그림은 흰색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사용자의 눈높이 (100~120m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규정증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1990. 2.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⑩

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훈령제00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규정증 개정규정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복부매점"란 다음에 "서울특별시 교육

위원회강서매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강서매점	강서교육구청내

부 록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구청과이하사무 분장규칙증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1990. 2.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⑩

⑥ 교육규칙제347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구청과이하 사무 분장 규칙 증 개 정 규 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구청과이하 사무분장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과학기술제" 다음에 "유아교육제"를 삽입한다.

제2조제2항중 "과학기술제" 다음에 "유아 교육제"를 삽입한다.

제2조제3항중 "초등교육(학령전 교육을 포함한다)"을 "초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제6항내지 제8항을 통조 제7항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아교육제는 유치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유아원 포함)

2. 연구·시범유치원 지도

3. 시청각 교육 및 기계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사

5. 원내 환경경화에 관한 사항

6. 교원과 인사, 재교육, 복무 및 경계에 관한 사항	예·관련 사항(유치원 제외)
7. 교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부 록
8. 교원에 대한 재증명 발급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 유치원 관리운영지도	
10. 원칙변경에 관한 사항	
11.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제2조제9항(종전의 제2조제8항)제1호중 "유치원"을 삭제한다.	
제3조제4항제7호 및 동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5호의 학교의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유치원 제외)	제2증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공고 전기공사업법 제29조2항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2증 공사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8. 제5호의 사업 지급학료의 예산·결산	1990. 1. 29 서울특별시장 고 진

- 아 래 --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사유
제 1212 호	일성에너지(주)	박덕근	신사동 585-13	영업정지 2월 '90. 1. 25~ '90. 3. 24	전기공사업법 제29조 2항 3호

◎서울특별시공고제5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설시계획공람공고

- 서울특별시고시제666호('78. 12. 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복동길(성복국교앞)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설시계획 인가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을 합니다.
- 관계도서는 성복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 성복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90. 1. 30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지 : 성복동65-8- 성복동
65-3간
- 사업의 종류 및 면적 : 성복동길(성복국교앞) 확장공사
- 사업의 규모 : 도로 확장 폭=30m, 연장=200m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 1-
'91.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로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
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주소·성명 :
별첨
- 8) 기타사항 : 의견 및 기타상세한 사항
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64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설정처분공고
전기공사업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2종 전기공사업체가 설립되
었기 등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1990. 2. 2

서울특별시장고건

- 아 래 -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사유
제 941 호	동양전력(주)	서 창 규	역삼동 797- 22 205호	설정	전기공사업법 제30조 제3항

◎서울특별시공고제69호

회계관계인 폐기 및 등록공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
에 따라 ('89. 11. 1 대통령령 제12833호)서울
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3조 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계관
계 공무원 직인 폐기 및 통복하였기 등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0. 2. 5

서울특별시장고건

직 인 등 록 조 서

회계명	일반회계	인영
판서명	서울특별시 생활체육과	
직명	서울특별시 생활체육과 분임물품출납원	
사용개시일	1990. 2. 5	

직 인 폐 기 신 고 시

회계명	일반회계	인영
판서명	서울특별시 건전생활과	
직명	서울특별시 건전생활과 분임물품출납원	
사용기간	1988년 8월 19일부터 1990년 2월 4일까지	

구 고 시

◎동대문구고시제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02호('89. 12. 29)로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된 우리
구 관내 이문동 105-10~휘경동 산6-35

간 도로의 1개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
정비과에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 20

동 대 문 구 청 장

아 래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규모(㎡)	위 치	변 경 내 역
기정	대로	3	40	B=25 L=11,210	군자동~수유동	
변경	대로	3	40	B=24-38 L=11,210	"	*선형 및 폭원변경 · 이문동 105-10 ~ 휘경동 산 6-35간 - B=25m → 24-38m - L=960m 이문동105-10~이문동 93-3간 B=25m → 24-25m, L = 130m * 경동5-1~휘경동 116-5간 B=25m → 31m, L=120m 휘경동65-5~휘경동산6-35간 B=25m → 25-38m L=300m
기정	대로	3	129	B=25 L=870	휘경동산 6-35 ~아문동 94-1	
변경 (폐지)				0		동부고속도로와 중복되어 폐지

나. 고시도면 : 생략

◎서초구고시제16호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시행허가

1. 건설부 허가 30262-25189('88. 12. 21)
호로 개포구역 허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

인시 연구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염곡
동 304번지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518호('89. 12. 27)로 14일간 이해관계
인에게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하여 다음과 같
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48 - 18

제1471호 서

보 1990. 2. 5

2. 관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 30.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 서울시 양곡동 30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연구시설)

다. 사업의 규모

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비고
14,810.8 중 10,025	2,546.18	13,255.34	연구시설 (학술회관)	전용 3동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박일재
마. 사업예정기간 : 착공년월일 - 1990. 1. 15
준공예정일 - 1992.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생략)
- 설계도 생략 -

◎성동구공고제5호

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 폐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무원 직인을 폐기하고 통 규칙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90. 1

성 동 구 청 장

가. 직인명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경리관
서울특별시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임직원
나. 폐기일 : 1989. 11. 21
다. 직인폐기인

구 공 고

직인 폐기 신고서

회계명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폐기당시 인명
판서명	성동구청장	
직명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경리관	
사용기간	1989년 11월 21일부터	



◎서대문구공고제7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에 따른 공고
1. 우리구 관내 서울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
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나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 1. 29

서 대 문 구 청 장

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 내용	사업 시행자	공람기간
도시계획사업(학교)	연희동 55-1 일대	교사숙소증축(기존) 3층위 1개층 증축 면적 : 675.36㎡	제단법인 서울의국인 학교 유재계단이사 고 일선	'90. 1. 29 '90.2.12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공람광고				
1. 건설부고시 제594호('89. 10. 26)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89.11.) 로 지적승인된 강동구 상일근린공원 조성 계획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62번 지 공원조성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독서실의 7개시설) 시행허가에 앞서 도시 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별시행령 제37조 의 2규정에 의하여 환계서류를 공람합니다.				

◎강동구공고제7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공람광고

1. 건설부고시 제594호('89. 10. 26)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89.11.)
로 지적승인된 강동구 상일근린공원 조성
계획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62번
지 공원조성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독서실의 7개시설) 시행허가에 앞서 도시
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별시행령 제37조
의 2규정에 의하여 환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
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
람하고 있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
는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1990. 2.
강 동 구 청 장

= 공 랈 요 지 =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62번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명일근린공원 부분
조성 공사
-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부지면적 14,485㎡
공원시설 설치면적 6,798㎡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동
171-27 남상교
-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 '91. 4. 3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조서
-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조서
- 공람장소 : 강동구청 공원녹지과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공원녹지
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용 또는 수 용 토 지

1. 사용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용 자	
				주 소	성 명
서울시 강 동구 상일동	산 62	임	14,485	서울시 중랑구 목동 171-27	남상교의 1인

2. 수용토지 : 없음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3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서울시 강 동구 상일동	산 62	임	14,485	서울시 중랑구 목동 171-27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3-18	남상교 이찬영

보 1990. 2. 5

◎송파구공고제10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원로공고

1. 강동구 고시 제25호('87. 7. 29) 및 송파구 고시 제72호 ('88. 12. 23)로 도시계획 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허가된 가락로 지구획정리사업 205-1블럭에 대하여 사업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87조의 2 및 제8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1. 30

송파구청장

가.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완료내역

시행허가 근거	사업 시행지	사업의 종류 명칭	사업의 시행 면적(㎡)	건축 면적(㎡)	건축 면적(㎡)	사업시행자
강동구 고시 제25호 ('87. 7. 29)	송파구 가락로지구 획정리사업 205-1블럭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 류장)	4,066	330	990	성동구 자양동 590~5 신홍교동 699일성빌의 1단
송파구 고시 제72호 ('88. 12. 23)	"	"	"	400.8	1,751.93	"

나. 준공도면: 별첨(생략)

◎은평구공고제2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란공고

1. 서울시 고시 제195호('77. 6. 22)로 지적승인된 진관내동 지축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을합니다.

1990. 2. 3

은평구청장

- 공람개요 -

- 가. 사업명: 진관내동-지축리간 도로확장
공사
- 나. 위치: 진관내동 410의 8~진관내동 410의 6간
- 다. 사업규모: 도로확장 B=20m,
L=160m(도로)
-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
- 마. 사업의 확수 및 준공예정일: '90. 9~'91. 12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사
령

◎1990년 1월 31일자

기능적 공무원 면직

명 제25호

성명	발령자	면직	면부서	급
박 양 순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총무과	지방사무로조원서보 (조무기능적10등급)

◎1990년 1월 30일자 4급공무원 출진임용

령 제27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 서	직 급
송 현 섬	지방시설기장에 임함. 상수도 사업본부 근무를 명함. 풀당수원지 사무소장에 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토목기과
시승일	지방시설기장에 임함. 종합건설본부 조경부장에 보함.	종합건설본부	"
강창구	지방시설기장에 임함. 양천구 건설국장에 보함.	양천구	"
양영규	지방시설기장에 임함. 내부국 근무를 명함.	성북구	"
옹종문	지방시설기장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근무를 명함. 영동포수원지 사무소장에 보함.	상수도사업본부	"
전희상	지방시설기장에 임함. 동대문구 도시정비국장에 보함	동대문구	지방건축기과
이강윤	지방임업기장에 임함.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시설과장 에 보함.	한강공원관리 사업소	지방임업기과
박수환	지방공업기장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근무를 명함. 구의수원지 사무소장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기과
인사발령통지			
령 제2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실시분석담당관			
지방서기관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실시분석담당관에 보함.			
서울특별시 민방위국 비상계획과			
5급상당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90. 1. 30			
김순적			
김재철			
'90. 1. 30			
대통령			

성명	발령사망	현부서	직급
전 익 철	지방서기관에 임함. 법무담당관에 보함.	법무 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임 계 오	지방서기관에 임함. 전산담당관에 보함.	전산 담당관	
김 상 둔	지방서기관에 임함. 주차계획담당관에 보함.	주차계획 담당관	
김 문 수	지방서기관에 임함. 노원구 건설국장에 보함.	노원구	
채 승 기	지방서기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기획과장에 보함.	공무원 교육원	
양 기 석	지방서기관에 임함.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서부과장에 보함.	한강공원 관리 사업소	
권 혁 모	지방서기관에 임함.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과장 ('90. 1. 30-'90. 11. 30)	내무국	
최 정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지방자치추진반)	"	
이 보 규	지방서기관에 임함. 기획담당관(국회연락담당)	"	
김 층 훈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이 창 회	지방서기관에 임함. 성북구 건설국장에 보함.	"	
이 점 환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가로정비추진담당)	"	
이 문 표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단과도대학반)	"	
이 재 효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구국 근무를 명함.	"	
박 경 반	"	"	
강 경 선	"	"	
임 세 근	"	"	
박 충 회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상국	지방서기관에 임한. 내무국 근무를 명함.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김영록 이태종	" 지방서기관에 임한. 한강공원관리사업소 관리과장 에 보임	" "	" "				
◎1990년 1월 31일자 5급 공무원 겸임							
령 제3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황정환	양정과 조직계장에 겸임함.	양정과	지방행정사무관				
◎1990년 2월 2일자 지방별점직 9급상당 공무원 연직							
령 제3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경애	원예 의뢰하여 그 직을 면함.	경찰국 면허과	행정직 9급 상당 (전공원)				
◎1990년 2월 3일자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령 제3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권혁준	지방지적기원보	영등포구	지적기원보				
김준수	"	성북구	"				
◎1990년 2월 5일자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전보							
령 제3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찬규	성북구	동대문구	지방건축기사보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승진 및 전보							
령 제34호							
연번 번호	성명	제 청	현 직				
		부서	직위(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1	신영호	시민생활과		지방도록기사	시민생활과		지방도록 기사보
2	이재호	중랑구본부		"	중랑구		"
3	오한수	"		"	탄천하수 처리장		"
4	김광호	강동구		"	관악구		"
5	고원산	남부건설 사업소		"	상수도 사업본부		"
6	이준해	차수파		"	차수파		"
7	장낙군	지하철 건설본부		"	지하철 건설본부		"
8	김한식	동부건설 사업소		"	제개발과		"
9	김정오	종합건설 부		"	성동구		"

인비 번호	성 명	제 청			현 계		
		부 서	직 위 (호 등)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0	이 동 명	도로계획과		지방 토목기사	시설계획과		지방 토목기사보
11	김 만 식	판 약 구		"	동 작 구		"
12	이 성 태	종로 구		"	강 서 구		"
13	한 만 구	중 땅 구		"	도봉 구		"
14	서 승 재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5	김 기 혁	종합건설 본부		"	종합 건설본부		"
16	파 범 구	도시개발과		"	도시개발과		"
17	이 영 민	종로 구		"	종합 건설본부		"
18	강 동 일	은 평 구		지방 토목기사보	강 서 구		지방 토목기원
19	최 진 선	도봉 구		"	북 구 건설사업소		"
20	이 강 선	종합건설 본부		"	동 작 구		"
21	원 광 회	동대문구		"	동대문구		"
22	정 정 택	도봉 구		"	도봉 구		"
23	백 경 철	성북 구		"	송파 구		"
24	고 대 건	처 수 과		"	중 땅 구		"
25	김 길 남	송파 구		"	송파 구		"
26	학 진 수	중 땅 구		"	중 땅 구		"
27	이 성 영	판 약 구		"	판 약 구		"
28	장 석 호	용 산 구		"	용 산 구		"
29	성 선 주	종합건설 본부		"	중 땅 구		"
30	임 규 삼	강 서 구		"	강 서 구		"
31	이 강 수	서대문구		"	영등포구		"
32	최 흥 순	성북 구		"	도봉 구		"
33	조 병 준	성동 구		"	성동 구		"

인비 번호	성 명	제 정			현 각		
		부 서	직 위 (호 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34	성 인 환	구로구		지 방 토목기사보	구로구		지 방 토목기원
35	신 김 철	영등포구		"	강서구		"
36	최 호 전	종로구		"	종로구		"
37	박 승 오	"		"	"		"
38	황 경 환	송파구		"	관 천 해수처리장		"
39	권 을 순	영등포구		"	영등포구		"
40	전 광 호	송파구		"	중 구		"
41	김 용 절	마포구		"	구로구		"
42	이 봉 민	은평구		"	서 구 건설사업소		"
43	박 기 용	"		"	서대문구		"
44	양 회 구	동작구		"	양천구		"
45	김 배 식	노원구		"	노원구		"
46	김 용 석	동대문구		"	동대문구		"
47	조 인 호	"		"	"		"
48	박 상 태	마포구		"	관 설 자재시험소		"
49	마 정 식	양천구		"	양천구		"
50	이 현 휘	관악구		"	관 악 구		"
51	이 재 흥	지하철 건설본부		"	지하철 건설본부		"
52	김 왕 수	강남구		"	중 구		"
53	홍 회 선	강동구		"	동작구		"
54	김 효 식	중 구		"	중 구		"
55	김 영 호	종합건설 본부		"	남산공원 관리(사)		"
56	박 치 갑	관악구		"	동작구		"
57	최 수 용	중랑구		"	중 양 구		"

연번 번호	성명	제정			합격		
		부서	직위 (호수)	직급	부서	직위	직급
58	윤영만	중구		지방토목 기사보	용산구		지방 토목기원
59	최재규	종로구		"	"		"
60	신경섭	서초구		"	중구		"
61	김양수	성북구		"	노원구		"
62	금상섭	건설자체 시합소		"	동대문구		"
63	황상연	동작구		"	관악구		"
64	안기정	하숙체인과		"	강동구		"
65	정향수	도봉구		"	도봉구		"
66	김학현	동작구		"	동작구		"
67	김재하	종로구		"	종로구		"
68	배선기	"		"	은평구		"
69	김수인	중랑구		"	양천구		"
70	이학규	관악구		"	서초구		"
71	오영국	동부전선 사업소		"	성동구		"
72	나종학	북부전선 사업소		"	종로구		"
73	이남구	성동구		"	동대문구		"
74	김승태	동작구		"	용산구		"
75	장명식	영등포구		"	영등포구		"
76	김병렬	서대문구		"	서대문구		"
77	심재주	도봉구		"	도봉구		"
78	곽윤국	마포구		"	보리매공원 관리(사)		"
79	안병학	도봉구		지방토목 기원보	중랑구		지방토목 기원보
80	정종석	건설자체 시험소		"	동대문구		"
81	박범경	성동구		"	성동구		"

인비 번호	성명	제 청			현 적		
		부 서	직위 (호 봉)	직급	부 서	직위	직급
82	이 경 복	성동구		지방 토목기원	성동구		지방 토목기원보
83	송 응	동대문구		*	동대문구		*
84	이 영 식	성북구		*	성북구		*
85	김 영 흠	구로구		*	마포구		*
86	김 경 수	도봉구		*	노원구		*
87	송 순 규	강동구		*	동작구		*
88	김 박 연	구로구		*	구로구		*
89	최 광 두	구로구		*	동작구		*
90	최 상 원	은평구		*	동대문구		*
91	이 순 경	성동포구		*	영등포구		*
92	정 영 회	성동구		*	성동구		*
93	김 판 현	양천구		*	양천구		*
94	구 철 회	종로구		*	종로구		*
95	전 영 기	구로구		*	종 구		*
96	지승현	도봉구		*	도봉구		*
97	강 용 원	도봉구		*	도봉구		*
98	이 기 춘	영등포구		*	영등포구		*
99	권 혁 대	관악구		*	성북구		*
100	최 병 태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01	이 수 근	구로구		*	동작구		*
102	원 기 호	중 구		*	중 구		*
103	김 기 용	중랑구		*	중랑구		*
104	박 종 감	서대문구		*	서대문구		*
105	김 영 식	관악구		*	관악구		*

인비 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06	권 오 풍	동대문구		지방 토목기원	성북구		지방 토목기원보
107	오 수 양	한천하수 처리장		"	한천 하수처리장		"
108	박 창 수	구로구		"	서초구		"
109	옥 덕 천	관악구		"	강서구		"
110	정 동 학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11	한 상 곤	서대문구		"	서초구		"
112	성 중 국	성북구		"	성북구		"
113	최 창 운	용산구		"	용산구		"
114	임 진 평	성동구		"	강동구		"
115	박 병 수	동부건설 사업소		"	성동구		"
116	정 현 석	마포구		"	마포구		"
117	최 남 호	서부건설 사업소		"	중구		"
118	이 구 선	마포구		"	마포구		"
119	박 경 태	남지하수 처리장		"	남지 하수처리장		"
120	김 승 태	영등포구		"	영등포구		"
121	백 여 선	남부건설 사업소		"	양천구		"
122	김 발 현	중구		"	중랑구		"
123	김 재 경	성동구		"	성동구		"
124	강 성 구	성동구		"	송파구		"
125	윤 여 국	종로구		"	종로구		"
126	김 동 끈	영등포구		"	영등포구		"
127	엄 상 용	성동구		"	중랑구		"
128	도 기 설	도봉구		"	도봉구		"
129	이 경 원	성북구		"	노원구		"

인구 번호	성 명	제 청			행 칙		
		부 서	적 위 (호 봉)	적 금	부 서	적 위	적 금
130	김 종 운	구로구		지 방 토목기원	구로구		지 방 토목기원보
131	송 석 호	동대문구		-	송파구		-
132	송 준 철	은평구		-	은평구		-
133	이 경 복	동작구		-	동작구		-
134	정 병 우	성동구		-	송파구		-
135	박 래 화	중 구		-	북 부 간접사업소		-
136	이 등 훈	중 구		-	중 구		-
137	소 철 호	동대문구		-	강남구		-
138	김 동 운	서초구		-	서초구		-
139	김 승 훈	성동구		-	중랑구		-
140	김 명 전	마포구		-	마포구		-
141	심 계 일	구로구		-	구로구		-
142	구 성 월	구로구		-	-		-
143	김 윤 배	은평구		-	은평구		-
144	이 영 국	성동구		-	성동구		-
145	문 경 수	마포구		-	강서구		-
146	이 창 돈	관악구		-	서초구		-
147	박 중 환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48	차 우 현	도봉구		-	도봉구		-
149	윤 광 회	동대문구		-	성북구		-
150	이 문 규	성북구		-	-		-
151	이 중 천	성북구		-	노원구		-
152	장 육 청	성동구		-	중랑구		-
153	한 흥 태	양천구		-	한강관리 사업소		-

인비 번호	성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 (호 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54	김 영 일	마포구		지방 토목기원	마포구		지방 토목기원보
155	강 광 용	종로구		"	서대문구		"
156	박 영 풀	서초구		"	서초구		"
157	송 명 근	종로구		"	종로구		"
158	배 창 식	도봉구		"	도봉구		"
159	정 도 모	구로구		"	구로구		"
160	이 영 수	중랑구		"	전설자체 시업소		"
161	신 성 근	안양하수 처리장		"	남부전설 사업소		"
162	이 민 영	강동구		"	강남구		"
163	장 성 용	강남구		"	"		"
164	이 삼 주	동작구		"	동작구		"
165	정 수 석	도봉구		"	도봉구		"
166	백 남 석	도봉구		"	"		"
167	김 만 재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68	조 현 철	북부건설 사업소		"	북부건설 사업소		"
169	이 창 민	서초구		"	서초구		"
170	이 상 배	중랑구		"	종합건설 본부		"
171	박 부 별	송파구		"	서대문구		"
172	박 병 준	구로구		"	송파구		"
173	임 병 훈	구로구		"	구로구		"
174	김 우 승	종로구		"	은평구		"
175	김 주 선	은평구		"	양천구		"
176	이 경 재	중랑구		"	중랑구		"
177	변 민 근	관악구		"	영등포구		"

인쇄 번호	성 명	제 정			면 적		
		부 서	직 위 (호 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78	김 상 수	서초구		지방 로목기원	서초구		지방로목 기원보
179	김 한 수	노원구		-	동대문구		-
180	주 양	중로구		-	동부건설 사업소		-
181	한 죽 수	성동구		-	중랑구		-
182	왕 원 근	서대문구		-	서대문구		-
183	박 죽 서	양천구		-	양천구		-
184	김 주 빠	구로구		-	구로구		-
185	김 영 호	양천구		-	양천구		-
186	김 경숙	마포구		-	마포구		-
187	배 행 기	남천공원 관리사무소		-	서부건설 사업소		-
188	오 수 용	강동구		-	강동구		-
189	조 성 죄	은평구		-	은평구		-
190	심 회 원	은평구		-	서부건설 사업소		-
191	조 광 휘	마포구		-	마포구		-
192	강 정 식	중랑구		-	노원구		-
193	임 호 빠	송파구		-	송파구		-
194	박 상 구	서부건설 사업소		-	양천구		-
195	최 죽 면	중랑구		-	중랑구		-
196	이 강 일	성동구		-	성동구		-
197	류 재 천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98	최 용 국	관악구		-	관악구		-
199	서 귀 동	노원구		-	도봉구		-
200	이 을 성	용산구		-	용산구		-
201	임 병근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로목기사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46-32 제1471호 시

보 1990. 2. 5.

인비 번호	성명	제정			현직		
		부서	직위 (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202	권 오석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203	김 한경	"		"	"		"
204	김 광호	"		"	"		"
205	홍 성구	"		"	"		"
206	김 윤식	"		"	"		"
207	김 광용	"		"	"		"
208	황 인택	"		"	"		"
209	이 경규	"		"	"		"
210	노 백환	"		"	"		"
211	김 판식	"		"	"		"
212	이 형로	"		"	"		"
213	양 원석	"		"	"		"
214	유 재철	"		"	"		"
215	이 종완	"		"	"		"
216	이 종천	"		"	"		"
217	장찬호	"		"	"		"
218	채병철	"		"	"		"
219	김 인중	"		"	"		"
220	류연환	"		"	"		"
221	이승현	"		"	"		"
222	김형선	"		"	"		"
223	주재식	"		"	"		"
224	최병우	"		"	"		"
225	이희영	"		"	"		"

인비 번호	성 명	제 정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226	권 오 식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227	정 윤 식	*		*	*		*
228	김 무 한	*		*	*		*
229	임 총 진	*		*	*		*
230	최 경 호	*		*	*		*
231	박 철 용	*		*	*		*
232	정 관 교	*		*	*		*
233	홍 수 회	*		*	*		*
234	이 품 복	*		*	*		*
235	이 행 윤	*		*	*		*
236	김 완 식	*		*	*		*
237	정 석 영	*		*	*		*
238	박 계 천	*		*	*		*
239	백 인 기	*		*	*		*
240	백 운 길	*		*	*		*
241	김 훈 백	*		*	*		*
242	문 영 출	*		*	*		*
243	정 총 끈	*		*	*		*
244	김 총 재	*		*	*		*
245	이 행 창	*		*	*		*
246	허 무 용	*		*	*		*
247	최 원 용	*		*	*		*
249	오 수 원	*		*	*		*

인비 번호	성 명	재 청			현		
		부 서	직 휘 (호 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250	정 춘 삼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251	신 동 호	"		"	"		"
252	나 태 산	"		"	"		"
253	김 정 효	"		"	"		"
254	박 준 기	"		"	"		"
255	이 상 흥	"		"	"		"
256	박 재 운	"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		지방수도 토목기원
257	김 동 환	"		"	"		"
258	김 달 희	"		"	"		"
259	심 상 후	"		"	"		"
260	김 인 환	"		"	"		"
261	류 주 열	"		"	"		"
262	최 현 태	"		"	"		"
263	조 관 호	"		"	"		"
264	정 윤 영	"		"	"		"
265	오 태 명	"		"	"		"
266	정 윤 상	"		"	"		"
267	노 영 석	"		"	"		"
268	송 기 만	"		"	"		"
269	신 규 식	"		"	"		"
270	조 성 진	"		"	"		"
271	안 영 목	"		"	"		"
272	심 죽 근	"		"	"		"
273	윤 용 승	"		"	"		"

인비 번호	성 명	재 청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별)	적 급	부 서	직 위	적 급
274	고명천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원
275	박종우	-		-	-	-	-
276	최철수	-		-	-		-
277	노대원	-		-	-		-
278	임택수	-		-	-		-
279	서정선	-		-	-		-
280	이동관	-		-	-		-
281	원외덕	-		-	-		-
282	김학무	-		-	-		-
283	김시령	-		-	-		-
284	윤기복	-		-	-		-
285	정재성	-		-	-		-
286	김동주	-		-	-		-
287	오왕근	-		-	-		-
288	남후원	-		-	-		-
289	곽성남	-		-	-		-
290	조창호	-		-	-		-
291	김준식	-		-	-		-
292	고재연	-		지방수도 토목기원	-		지방수도 토목기원보
293	한승희	-		-	-		-
294	김태환	-		-	-		-
295	조남인	-		-	-		-
296	김석권	-		-	-		-
297	안원길	-		-	-		-

인비 번호	성 명	체 침 청			현 주		
		부 서	직 위 (호 급)	직급	부 서	직 위	직급
298	강 동 철	상 수 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원	상 수 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원보
299	최 향 주	"		"	"		"
300	김 명 수	"		"	"		"
301	박 혁 순	"		"	"		"
302	최 상 윤	"		"	"		"
303	이 선 재	"		"	"		"
304	남 정 텔	"		"	"		"
305	박 치 규	"		"	"		"
306	김 도 설	"		"	"		"
307	김 감 전	"		"	"		"
308	김 효 상	"		지방 화공기원	상 수 도 사업본부		지방화공 기원보
309	류 재 영	양천구		"	양천구		"
310	이 재 성	송파구		"	송파구		"
311	서 전 식	상 수 도 사업본부		"	상 수 도 사업본부		"
312	김 형 섬	"		"	"		"
313	권 혁 준	영등포구		지방 지적기원	영등포구		지방지적 기원보
314	김 춘 수	성북구		"	성북구		"
315	전 창 열	송파구		"	송파구		"
316	홍 행 표	강동구		"	강동구		"
317	김 경 민	종로구		"	종로구		"
318	김 흥 규	관악구		"	관악구		"
319	송 세 범	동대문구		"	동대문구		"
320	김 경 회	중 구		"	중 구		"
321	김 향 수	서초구		"	서초구		"

인비 번호	성 명	제 청		현 적		
		부 서	적 위 (호 번)	적 금	부 서	적 위
322	박 태 준	동작구		지 행 지적기원	동작구	
323	김 성 옥	강서구		"	강서구	"
324	현 계 환	강남구		"	강남구	"
325	김 기 식	마포구		"	마포구	"
326	정 대 순	성북구		"	성북구	"
327	김 기 중	용산구		"	용산구	"
328	박 휘 중	구		"	중 구	"
329	이 용 국	서초구		"	서초구	"
330	최 민 용	양천구		"	양천구	"
331	안 흥 기	구로구		"	구로구	"
332	노 전 수	동대문구		"	동대문구	"
333	박 상 영	중랑구		"	중랑구	"
334	김 명 수	송파구		"	송파구	"
335	박 수 영	은평구		"	은평구	"
336	김 민 규	강동구		"	강동구	"
337	서 미 연	중랑구		"	중랑구	"
338	김 해 경	강동구		"	강동구	"
339	김 형 구	서대문구		"	서대문구	"
340	이 월 총	강남구		"	강남구	"
341	조 현 회	도봉구		"	도봉구	"
342	조 종 화	도봉구		"	"	"
343	김 영 상	동대문구		"	동대문구	"
344	차 미 영	관악구		"	노원구	"
345	박 회 영	동대문구		"	동대문구	"

인비 번호	성명	지 청			현적		
		부서	직위 (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346	손 문호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로목기사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로목기사보
347	정 계현	용산구		지방 로목기사	"		지방 로목기사
348	정민식	동작구		"	"		"
349	황 인기	중랑구		"	"		"
350	김 선중	관악구		"	"		"
351	이재철	성동구		"	"		"
352	김준일	중구		"	"		"
353	양월남	노원구		"	"		"
354	조수창	도봉구		"	"		"
355	조순현	치수과		"	"		"
356	한석창	구로구		"	"		"
357	윤철	강남구		"	"		"
358	김학수	마포구		"	"		"
359	김정배	하수처리과		"	"		"
360	송치윤	강서구		"	"		"
361	황외태	주택개량과		"	"		"
362	안병식	도로계획과		"	"		"
363	김경기	도로시설과		"	"		"
364	홍기창	복부전시 사업소		"	"		"
365	이종규	강동구		"	"		"
366	이광석	도로계획과		"	"		"
367	정혁규	송파구		"	"		"
368	황영도	은평구		"	"		"
369	서철호	지수과		"	"		"

인비 번호	성 명	제 청			현 적		
		부 서	직 위 (호 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370	황 종 화 은평구			지 방 토목기사	상수도 사업본부		지 방 토목기사
371	김 성 도 용산구			"	"		"
372	이 전 우 서대문구			"	"		"
373	이 용 대 종합 건설본부			"	"		"
374	심 재 흥	"		"	"		"
375	유 길 상 감사 1 담당관			"	기술심사 담당관		"
376	오 천 균 강동구			"	주 턱 개량과		"
377	김 영 복 종합 건설본부			"	도로 계획과		"
378	소 득 수	"		"	치수과		"
379	전 삼 화 중 구			"	종로구		"
380	정 성 국 관악구			"	중 구		"
381	홍 사 인 양천구			"	도봉구		"
382	김 경 봉 도봉구			"	은평구		"
383	채 수 혼 마포구			"	서대문구		"
384	이 동 환 강남구			"	마포구		"
385	윤 무 지 강서구			"	구로구		"
386	김 영 철 서대문구			"	관악구		"
387	박 명 숙 중 구			"	"		"
388	류 회 상 공원과			"	강남구		"
389	김 판 기 서초구			"	동부건설 사업소		"
390	박 영 백 영등포구			"	남부건설 사업소		"
391	김 창 배 종로구			"	북부건설 사업소		"
392	조 재 범 구로구			"	한강공원 관리(사)		"
393	윤 수 길 송파구			"	종합 건설본부		"

인비 번호	성 명	개 정			현 적		
		부 서	직 위 (호 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394	정 근 모	기술심사 담당관		지방 토목기사	서초구		지방 토목기사
395	진 석 우	건설자재 시험소		"	종합 건설본부		"
396	서 성 기	하수 처리과		"	"		"
397	김 권 수	중랑하수 처리장		"	"		"
398	정 준 영	강동구		"	영등포구		"
399	김 성 모	도로 계획과		"	성동구		"
400	장 인 규	정동포구		"	구로구		"
401	강 남 구	양천구		"	도로 시설과		"
403	이 쌍 동	강동구		지방토목 기사보	강남구		지방토목 기사보
404	한 형 록	관악구		"	종합 건설본부		"
405	임 종 범	종합 건설본부		"	도로 계획과		"
406	홍 동 표	"		"	송파구		"
407	김 경 동	남부건설 사업소		"	동작구		"
408	류 빽 상	건설자재 시험소		"	종합 건설본부		"
409	이 재 철	종합 건설본부		"	동대문구		"
410	류 성 근	"		"	용산구		"
411	이 현 정	구로구		"	동작구		"
412	배 광 환	치수과		"	"		"
413	이 석 원	종합 건설본부		"	성동구		"
414	구 교 윤	민천하수 처리장		"	송파구		"
415	김 원 철	안양하수 처리장		"	영등포구		"
416	남 창 우	제개발과		"	공원과		"
417	이 민래	하수 처리과		"	안양하수 처리장		"
418	조 성 길	세종문화 회관		"	종합 건설본부		"

인비 번호	성 명	제 청			현 적		
		부 서	직 위 (호 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419	장 영 각	동작구		지방토목 기사보	서초구		지방토목 기사보
420	김 인 겸	도봉구		"	상수도 사업본부		"
421	박 능 선	강동구		"	"		"
422	황 두 식	마포구		"	"		"
423	이 재 승	중랑하수 처리장		"	"		"
424	전 용 완	서울 대공원		"	"		"
425	송 영 배	중 합 건설본부		"	"		"
426	구 현 모	주 택 개 량 과		"	"		"
427	김 정 래	서부건설 사업소		"	주 택 개 량 과		"
428	김 동 수	강동구		"	종로구		"
429	이 승 전	도 로 계획과		"	용산구		"
430	기 순 식	영등포구		"	성동구		"
431	오 순 천	중 합 건설본부		"	동대문구		"
432	정 전 오	난자하수 처리장		"	성북구		"
433	이 용 선	건설자재 시험소		"	"		"
434	신 도 수	영등포구		"	은평구		"
435	이 명 균	중 합 건설본부		"	"		"
436	송 철 호	서부건설 사업소		"	서대문구		"
437	권 명찬	도 로 계획과		"	마포구		"
438	이 석 재	동작구		"	구로구		"
439	신 용 수	도 로 시설과		"	"		"
440	아 두 식	은평구		"	영등포구		"
441	주 복 기	"		"	"		"
442	조 익 행	구로구		"	동작구		"

인비 번호	성 명	제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443	한 석 철	성동구		지방토목 기사보	강동구			지방토목 기사보
444	송 재 훈	관악구		"	"			"
445	권 형 전	시 설 계획과		"	종합 건설본부			"
446	박 문 수	동작구		"	"			"
447	백 동 현	구로구		"	"			"
448	박 풍 식	한천학수 처의장		"	"			"
449	류 광 영	치수과		"	전침자재 시업소			"
450	강 풍 구	도로 계획과		"	동부건설 사업소			"
451	임 광 빙	기술심사 담당관		"	서부건설 사업소			"
452	이 회 만	종합 건설본부		"	도봉구			"
453	김 영 훈	성북구		"	종합 건설본부			"
454	최 정 태	은평구		"	"			"
455	우 남 적	용산구		"	"			"
456	정 뱍 전	남산공원 관리사무소		"	"			"
457	이 윤 주	동작구		"	"			"
458	이 춘 풍	용산구		지방토목 기원	도봉구			지방토목 기원
459	박 용 우	"		"	종합 건설본부			"
460	김 낙 전	북부건설 사업소		"	도봉구			"
461	김 석 년	송파구		"	성동구			"
462	박 대 전	"		"	"			"
463	엄 기창	종로구		"	"			"
464	김 부 철	중랑구		"	성북구			"
465	김 재 전	성동구		"	은평구			"
466	정 대 술	중구		"	"			"

인비 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467	채 이 균	양천구		지방토목 기 원	서대문구		지방토목 기 원
468	이 경 구	"		"	구로구		"
469	김 흥 한	영등포구		"	"		"
470	손 학 중	성동구		"	"		"
471	고 볼 회	강서구		"	관악구		"
472	김 를 표	동작구		"	"		"
473	김 윤 중	양천구		"	"		"
474	이 해 중	서대문구		"	서부건설 사업소		"
475	정 해 성	증평구		"	북부건설 사업소		"
476	전 월 규	보라매공원 관리사업소		"	마포구		"
477	최 경 수	건설자재 시 협 소		"	성동구		"
478	이 상 현	안양학수 처리장		"	종로구		"
479	최 규 영	동대문구		"	성동구		"
480	엄 중 윤	은평구		"	중랑구		"
481	방 효 만	건설자재 시 협 소		"	노원구		"
482	전 승 전	종합건설 본부		"	강동구		"
483	최 영 회	"		"	양천구		"
484	배 석 동	동부건설 사업소		"	성동구		"
485	이 재 수	독 지 사업소		"	종로구		"
486	정 재 현	증평구		"	강남구		"
488	이 상 복	증로구		지방토목 기 원 보	성북구		지방토목 기 원 보
489	김 석 환	서초구		"	강동구		"
490	이 형 뮤	관악구		"	용산구		"
491	이 윤 권	송파구		"	성동구		"

인비 번호	성명	재			현		
		부서	직위 (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492	권복철	용산구		지방토록 기원보	성동구		지방토록 기원보
493	조한광	"		"	"		"
494	한상권	도봉구		"	"		"
495	이익범	성동구		"	동대문구		"
496	국중진	"		"	"		"
497	박봉규	도봉구		"	성북구		"
498	최병언	용산구		"	"		"
499	김태현	"		"	은평구		"
500	김귀룡	서대문구		"	"		"
501	김장덕	"		"	"		"
502	김완규	도봉구		"	서대문구		"
503	고석종	관악구		"	구로구		"
504	김용희	"		"	"		"
505	박홍규	용산구		"	영등포구		"
506	허영엽	관악구		"	"		"
507	류관식	영등포구		"	관악구		"
508	박준배	동작구		"	"		"
509	김호익	성동구		"	강동구		"
510	박중섭	건설자재 사업소		"	"		"
511	정준용	복부건설 사업소		"	노원구		"
512	우진택	송파구		"	마포구		"
513	강철규	서초구		"	서대문구		"

◎1990년 2월 8일자		6급공무원 전임	령제 35 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박 경희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부자관리담당관 근무를 명함	산 험 청	행정주사
최재우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관체과 근무를 명함	정부전자계산소	
변동열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건설행정과 근무를 명함	총 무 처 감 사 관 실	
◎1990년 2월 3일자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징계처분	령제 36 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박 용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2호에 의거 감봉1월에 처함	종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사보
김 용택	불문경고(서울시 제2인사 위원회 의결사항)	수도사업본부	지방건축기사
◎1990년 2월 5일자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령제 37 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박 창전	성 동 구	양천구	지방행정주사
한 익연	도봉구	치수과	"
김 상질	서울시립대학교 파견 (90. 2. 5. - 91. 2. 4.)	강남구	지방행정서기
도 용기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종로구	"
송 해선	노원구	동작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용준	운수 1과	"	지방행정서기
◎1990년 1월 1일자		6급이하 기술직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령제 496 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서	직 급
이정환	지방임업기원보	성동구	임업기원보
이기성	"	동대문구	"
이종환	"	"	"
김민연	"	성북구	"
김은중	"	도봉구	"
김재현	"	"	"
윤명중	"	은평구	"
김남현	"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종원		서대문구	
최영희		마포구	
정경근		구로구	
장병숙		강동구	
강안찬		강남구	
안기언		강동구	
최임병		강동구	
이승용	지방기계기원보	강동구	기계기원보
김재중		강동구	
박영래		봉포구	기계기원
김규용	지방기계기원	도봉구	
유병기		포구	

©1990년 2월 1일자
별첨적 공무원 전보

형제 8 호

인비 번호	성명	제정현직			현직		
		부서	직위	급	부서	직위	급
1	박정호	원예 회하여 그 직을 면함			김포수원자		지방별경직 8급상당

별첨적 공무원 전보

형제 9 호

인비 번호	성명	제정현직			현직		
		부서	직위	급	부서	직위	급
1	박정호	김포수원자	지방별경직 7급상당		신규		

기능적 공무원 전보

형제 10 호

인비 번호	성명	제정현직			현직		
		부서	직위	급	부서	직위	급
1	황병식	서부수도	지방운전원	중부수도	지방운전원		
		사업소	(10급상당)	사업소	(10등급)		
2	고진해	서무파					
3	박충일	강동수도					
4	박우철	사업소					
5	최창수	동부수도					
6	노병배	사업소					
7	김충배	북부수도					
		사업소					
		온평수도					
		사업소					

서울특별시 강수도 사업본부장

시보1466호 인사명령 제497호(1990년 1월 1일자)
659번 박종진을 박종진으로 정정공고합니다.

정정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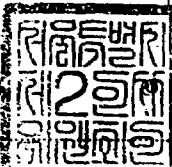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인 적 자 본 적 항 주 소	김 전 천 (金珍顯)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62-66 서울 은평구 불광2동 170-66	소속 직명	내무국 대기 지방행정주사보
출석 이유	심문 및 진술		
출석 일시	1990년 2월 13일 14시 00분		
출석 장소	서장 기회상봉실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 를 즉시 제출한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진술권포기서

인 적 자 본 적 항 주 소	, 소속	직명

1990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0년 월 일

성명

④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인 적	성명	김식영 (金錫英)	소속	내무국 대기
사 적	직명	지방화공기연		
본 적	충남 부여군 용산면 나촌리 255번지			
주 소	서울 강서구 와곡5동 주공아파트 43동 409호			
출석이유		소문 및 진술		
출석일시		1990년 2월 13일 14시 00분		
출석장소		시청 기획실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기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정체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제 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진술권포기서

인 적	성명	소속	직명
사 적			
본 적			
주 소			

199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년 월 일

성명

⑪

서울특별시제 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